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역 노사민정 지원에 관한 국가의 의무 강화 등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195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역 노사민정 지원에 관한 국가의 의무 강화 (안 제2조제5 호의2 신설 및 제3조제2항)	2
2.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근거규정의 법률 상향 규정 (안 제3조 의2 신설)	5

I. 제안경위

2025년 8월 14일 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노동자, 기업인,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 등을 위해 협력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임.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일부 광역자치단체만 간헐적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돼 있을 뿐,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사실상 제도가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노사민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여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하위 시행령에 있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근거 규정을 상위 법률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진정한 의미의 지역별 사회적 대화 기구로 거듭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지역 노사민정 지원에 관한 국가의 의무 강화

(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및 제3조제2항)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지역 노사민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시책으로 추가하고, 현행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국가의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국가의 의무로 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국가의 책무)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5의2. 제3조제1항의 지역 노사민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생략)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u>지원할 수 있다.</u>	② ----- ----- <u>지원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 등 총 8가지 사항에 관한 시책을 국가가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한편, 현행법 제3조제2항은 국가가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는 동 규정에 따라 현행법 제3조제1항²⁾ 및 시행령 제2조³⁾에 따라 각 지

1)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

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음.⁴⁾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사업 지원 >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지원 지자체수	79	80	80	65	65	63	63	68	56	49
지원예산	2,000	1,900	1,630	1,630	1,556	1,476	1,402	1,402	1,160	1,160

자료 : 고용노동부

개정안은 현행법에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의무화하고, 국가가 수립·시행하여야 할 시책에 지역 노사민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노사민정 협력과 관련한 지자체의 업무수행 역량이 지자체별로 상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는 구성·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자세한 내용은 <참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및 지원사업 개요 참조

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지자체의 노사민정 협력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⁵⁾

2.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근거규정의 법률 상향 규정

(안 제3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와 관련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임.

구체적으로, 지자체에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자체장과 노사관계·고용경제 관련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된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공동으로 함.

협의회는 ①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②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③노사관계·고용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지자체장이 위촉하며, 협의회는 ①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

5)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한 사항, ③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의2(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공동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노사관계·고용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인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⁶⁾ 같은 법 시행령은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하여 규정⁷⁾하고 있는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법적 안정성이 제고되고 지속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

-
- 6)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7)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 ④ 협의회는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는 구성·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협의회 위원장을 해당 지자체장과 노사관계·고용 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촉된 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 시행령이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하되,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 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규정한 것임.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나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현행 시행령 문구대로 법률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향후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지역별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지역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되, 이를 확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840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바, 지역 노사민정 협력 및 지역 사회적대화 지원과 관련한 정부(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간 적정한 역할 분담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도 있겠음.

개정안에 대하여 전국지역노사민정사무국협의체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이 높고,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

단체장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경상남도는 개정안이 협의회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항으로 ‘사무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사무국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35

참 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및 지원사업 개요

□ (개념) 지자체가 노사 및 주민대표 등과 협력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안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심의하는 회의체

□ (설치 현황)

구분(개소)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광역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기초	130	133	135	138	141	147	147	149	150	150
합계	147	150	152	155	158	164	164	166	167	167

□ (근거) 「노사관계발전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사관계발전지원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지원사업 내용) 노사민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용의 일부 지자체 지원

○ (예산지원) '25년 49개 지자체(광역 15, 기초 34)에 대해 1,160백만원 지원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지원 지자체수	79	80	80	65	65	63	63	68	56	49
지원예산	2,000	1,900	1,630	1,630	1,556	1,476	1,402	1,402	1,160	1,160